

**(편입학년도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등급 학점 및 교과목이수 기준
(2013년도 보육사업안내))**

○ 2005. 1. 30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교과목 및 학점 기준이 변경된 바, 편입학년도별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음

1) 2005년 1월 29일 이전 (전문)대학 입학자

(가) 대상자

○ 2005년 1월 30일 현재 대학(전문대학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종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[별표4]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중인 자로 아래 경우를 말함

구 분		대 상 자
입 학 생	학과별 모집 학교	-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자
	학부별 모집 학교	-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소속된 학부에 재학 중인 자
	계열별 모집 학교	-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소속된 계열에 재학 중인 자
편입생, 전과생, 복수전공생		-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(학부, 계열)로 편입한 자, 전과한 자, 복수전공하고 있는 자 ※ 편입, 전과, 복수전공 시기가 2005년 3월이더라도 2005년 1월 30일 현재 편입, 전과, 복수전공 신청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재학 중인 자로 인정. 다만, 자격증 발급 시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(나) 자격등급 및 교과목·학점 인정 기준

- 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2항 [별표4]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교과목 중 총 10과목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4주 이상의 보육실습을 실시하고 졸업할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인정
-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[별표4]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과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

(다) 유사교과목 인정 범위

- 종전 법에 의한 교과목의 경우 과목명이 다소 상이하더라도 내용이 유사

한 경우로써 유사교과목 확인서<서식 Ⅲ-2>를 제출한 경우 심의를 통해 동일 과목 인정 여부 결정

2) 2005년도 입학자의 경우

(가) 대상자

- 2005학년도에 대학(전문대학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여 종전 시행규칙 제8조제2항 [별표4]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를 전공하는 자 및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[별표4]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자

(나) 자격등급 및 교과목·학점 인정 기준

- 종전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[별표4]의 규정에 의한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로 인정되는 교과목 12과목 35학점(보육실습 포함) 이상
- 또는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[별표4]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인정
- ※ 종전 법과 현행 법에 의한 교과목을 혼합하여 이수하는 경우도 인정하되 영역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수하여야 함

3)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

(가) 대상자

- 2006년도 이후 대학(전문대학 포함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 입학한 자

(나) 자격등급 및 교과목·학점 인정 기준

- 현행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[별표4]에 규정된 보육관련 교과목 중 총 12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가능
- 2006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반드시 현행 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보육교사 자격 취득 가능

4) 편입학생, 전과생, 복수전공생에 대한 적용

(가) 학점 인정 기준 및 졸업 시 보육교사 자격등급은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법과 현행 법을 적용하되, 교과목은 탄력적으로 적용

(나) 교과목 인정 기준

- 교과목 인정 기준은 편입, 전과, 복수전공 당시 같은 학년의 교과목 인정 기준에 따름

(다) 학점 인정 기준

-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·전과·복수전공생 : 총 10과목 30학점 이상
-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·전과·복수전공생 : 총 12과목 35학점 이상

(라) 자격등급 기준

-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·전과·복수전공생 : 보육교사 1급
-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·전과·복수전공생 : 보육교사 2급